

산업(농공)단지

□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항

○ 지방세 감면

지원대상	취득세	재산세	관련법규
신축/증축	50% 경감	5년간 75% 경감	[지방세특례제한법] 제78조 제4항 (2020년기준)
대수선	25% 경감	해당없음	

※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